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일반형·확장형 수요기관 2차 모집 공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경영 지원 업무 인프라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0년도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 밀집지역內 화상회의실 구축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화 촉진
- **신청대상** :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협회·단체
 - * 중소·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과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중소·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는 기관으로 화상회의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협회·센터 등)

《 기관 및 협·단체의 자격요건 예시 》

-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 ③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테크노파크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
- 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⑧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업지원센터(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 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협회
- ⑩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⑫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 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⑭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 ⑮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⑯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⑰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업종별 협·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등

2. 사업개요

□ 선정규모 : 878개소 내외 수요기관

- 일반형 : 873개소 내외
- 확장형 : 5개소 내외 (대규모 수출상담회 및 국제행사 지원 등 다목적 활용 용도로 이용 가능하고 지역 거점기능 역할 수행이 가능한 화상회의실)

□ 지원내용 : 화상회의 장비, 소프트웨어솔루션 구입비용 등

《 수요기관 지원내용 》

유형	지원 내용	세부 내용	지원예산	비고
일반형 (873개소 내외)	■ 화상회의실 구축 * 기존 수요기관 회의실을 활용하여 구축	■ 화상회의실 구축비용 지원 - 소형 : 7인실 이하 - 중형 : 8인실~16인실 - 대형 : 17인실 이상 *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어장비, 화상회의 솔루션 (가구 구매 불가)	<소형> 8백만원이내	소·중·대 회의실 中 택 1
			<중형> 12백만원이내	
			<대형> 12백만원이내	
확장형 (5개소 내외)	■ 대규모 실시간 수출상담회, IR 대회 등 행사 운영이 가능한 화상회의실 구축	■ 고화질·고음향 디스플레이 및 최첨단 음향장비 구축 * 수요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실시	500백만원이내	-

* 화상 회의실 구축을 위한 공급기업 Pool 및 표준장비 세트는 운영기관에서 선정된 수요기관(확장형 제외)에 별도 제공

- (신청규모) 수요기관별 건물 내 1개소 신청 가능
 - 동일 소속 기관에서 분리된 건물에 화상회의실을 구축할 경우, 사업 신청서를 별도 작성하여 추가 신청 가능
 -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신청 가능
- (지원기간) 선정일부터 협약일까지(선정일 ~ '20.12.31까지 예정)

- (지원예산) 화상회의실 구축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구축 후 화상회의실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는 전액 수요기관 부담
 - * 본 사업은 비영리 목적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하며, 추후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처리를 원칙으로 함(영상장비를 활용한 수익사업은 영위 불가)
 - * 지원예산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관련법에 따라 조달 입찰을 통해 공급 기업을 선정하여야 함. 단, 계약의 특례사항으로 정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지침에 따라 추진할 수 있음(2,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일반형 : 총 사업비 전액 국비로 지원
- 확장형 : 총 사업비 전액 국비로 지원이 원칙이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평가 시 자부담금 비율을 평가요소에 반영

3.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원칙** : 화상 회의실 구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사용할 수는 여건(개방성, 접근성, 활용성 등) 및 사후관리 계획 등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구축·운영계획을 기준으로 평가
 - * 확장형은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거점기능 수행 추가 고려
- **평가절차** : 1차 서류평가 및 2차 현장 확인 평가로 진행
 - (1차 평가) 구축·운영계획서 내용을 서류평가
 - * 단, 권역별 선정규모와 관계없이 서류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하고, 확장형은 필요 시 발표평가 실시
 - (2차 평가) 화상 회의실 구축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및 평가
 - * 화상 회의실 구축 대상 시설의 현황, 중소기업 밀집도 등
- **최종선정 및 결과발표**
 - 1차 서류평가를 통해 2차 평가대상을 선정하며, 1차, 2차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순으로 권역별 수요기관 선정 범위 내에서 선정
 - 일반형 선정 결과는 운영기관(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 융합중앙회)에서 개별 공지 예정 ('20.11월 초 예정)

- 확장형 선정 결과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서 K-스타트업에 공지 예정 ('20.11월 초 예정)

* 선정 진행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주요 추진일정 >

구분	사업공고	신청	평가·선정		최종선정	구축 등
			1차 (서류)	2차 (현장)		
	공모계획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시설 등 현장 평가	최종선정 결과 공지	화상회의실 구축 및 현장점검
일반 확장	'20.10월	'20.10월	운영기관(테크노파크,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전담기관(창진원)		'20.10월	'20.11월~12월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 · 제출 방법

- **중기부 사업공고** : '20.10.7.(수)~10.22(목), 17:00까지

- e-나라도움 신청서 접수 : '20.10.8.(목)~10.22(목), 17:00까지

* 접수기한 내 온라인 신청·접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함(10.7 전에는 e-나라도움에서 확인 불가)

- **신청방법**

- 이나라도움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접수(전담·운영기관별로 신청·접수란이 상이하오니 사업 신청 시 권역(지역) 및 기관명을 필히 확인)

- 이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 접속 → 로그인 후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사업」 신청

* 이나라도움 누리집 → 회원가입(기관등록 완료 후 담당자 등록) → 로그인 → 사업 수행 관리 → 신청관리 → 공모현황 → 사업신청서 작성

* hwp형식의 문서만 가능하며, pdf, pptx 등 타 형식의 문서는 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사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및 첨부서류 (용량 최대 50MB 이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참여가 불가함
-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시점 이후 수정·변경 불가함
- 선정된 수요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일반형 협약은 운영기관(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 융합중앙회)과 수요기관 2자 협약을 체결하며, 구축비용(정부지원금)은 수요기관이 집행·관리
 - 확장형의 경우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수요기관 간 2자 협약을 체결하며, 구축비용(정부지원금)은 수요기관이 집행·관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수요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는 적용 예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수요기관은 구축된 화상회의실 장비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 사업운영지침에 의거 지원금액 전액 환수 및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선정 후라도 사업수행과정에서 참여조건 미 충족 시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사업비 부정·목적 외 사용, 지침 상 제재조치 등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수요기관은 구축된 화상회의실을 기업에게 개방해야 하며, 개방이 어려울 경우 구축비용 등에 대해 환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수요기관은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협약체결 안내 요청 후 1개월 이내 협약을 완료하며, 기한 내 협약 진행이 어려울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 결과보고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급기업과 수요기관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사업비를 지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사용목적)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 부과, 정부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 사업자 등록 및 형사고발이 진행될 수 있음

* 관련법령 : 보조금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 운영지침(‘화상회의실 구축·운영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함
- 화상회의실 구축 장비는 일반형은 운영기관, 확장형은 전담기관 승인 없이 임의 처분이 불가함

* 장비의 처분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담·운영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위반 시 환수 및 처벌 등의 조치 가능)

6. 추진일정

□ 일반형

- 수요기관 신청·접수 : '20.10. 8 ~ 10.22
- 평가(서면, 현장) 및 선정 : '20.10.23 ~ 10.30
- 2자(운영기관-수요기관) 간 협약 체결 : '20.11. 2 ~ 11. 4
- 수요기관-공급기업 매칭 : '20.11. 5 ~ 11. 6
-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 '20.11. 9 ~ 12.11

□ 확장형

- 수요기관 신청·접수 : '20.10. 8 ~ 10.22
- 평가(대면, 현장) 및 선정 : '20.10.23 ~ 10.30
- 2자(전담기관-수요기관) 간 협약 체결 : '20.11. 2 ~ 11. 4
-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 '20.11. 5 ~ 12.31

*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 문의

- (시스템 관련) 이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 (☎ 1670-9595)
- 일반형 신청 : 운영기관 (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권역	운영기관명	담당자	직함	연락처	이메일
서울	서울테크노파크	전경아	주임	02-944-6031	untact@seoultp.or.kr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김우정	주임	042-331-0573	philia@k-sca.or.kr
경기	경기테크노파크(남부)	이도훈	주임	031-500-3076	dhl@gtp.or.kr
	경기대진테크노파크(북부)	이아름	연구원	031-539-5044	arulee@gdtp.or.kr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백유현	대리	031-888-5524	paiku@daum.net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유동식	과장	032-260-0613	dsyoo@itp.or.kr
강원	강원테크노파크	길정훈	차장	033-248-5616	sider26@gwtp.or.kr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서완교	책임	042-930-4882	mark2151@djtp.or.kr
세종	세종테크노파크	김수영	연구원	044-850-2147	ksy88@sjtp.or.kr
충남	충남테크노파크	이정현	과장	041-589-0634	fangse@ctp.or.kr
충북	충북테크노파크	김경수	책임	043-270-2211	kskim@cbtp.or.kr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손대수	책임	053-757-4141	dsson@ttp.org
경북	경북테크노파크	박시찬	주임	053-819-3064	psc34@gbtp.or.kr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강동기	연구원	051-320-3681	sense742@btp.or.kr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최선아	연구원	052-219-8623	csa1407@utp.or.kr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허태영	선임	055-259-3373	yeshty@gntp.or.kr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박래열	책임	062-602-7221	daviz@gjtp.or.kr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장미정	선임	061-729-2541	jarose91@jntp.or.kr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김재희	선임	063-219-2146	jhjh1205@jbtp.or.kr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조정민	연구원	064-720-3031	jungmin@jejutp.or.kr

* 중소기업 융합중앙회는 서울 및 경기지역 지식산업센터만 선정·구축 지원

- 확장형 신청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전담기관명	담당자	직함	연락처	이메일
창업진흥원	조요한	대리	042-720-4548	yhjo@kised.or.kr

참고 1

선정요건

□ 공간확보

- 사업선정 수요기관은 3년 이상 화상회의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 수요기관은 사업신청 前 회의실 구축 예정 공간을 확정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시 공간 확보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 건축 예정이거나 개방형 공간(리모델링 등)은 신청 불가
 - ** 건물 등기부등본(자가)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 등 제반서류 별첨(선정 후 공간 변경은 불가하나 전담·운영기관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가능)
 - 시설의 일부를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화상회의실 구축 예정 공간과 기존 시설의 공간적·기능적 분리하여 운영계획 수립 필수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회원제 등 폐쇄적 이용 불가)

□ 운영역량

- 신청기관은 수요기관 소속 사업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 참여
- 화상회의실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상시 지원인력* (관리부서, 담당자 등) 지정하여 운영
 - *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시간대별, 요일별로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 가능
- 중소·벤처기업의 이용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입지에 대한 분석과 잠재 이용자 분석에 기반하여 사업계획 수립
-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한 주요 지원 서비스 연계·활용 가능

□ 운영책임

- 화상회의실 개소일로부터 3년 간 화상회의실을 운영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운영 중단 시 장비 등 환수 및 제제 조치 가능

※ 화상 회의실 활성화, 사후관리 등 선정조건을 참고하여 구축·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참고 2 일반형 평가기준

□ 추진원칙

구분	내용
활용성	연간 활용계획의 적절성
사후관리	사후관리 계획(화상회의실 장비 관리 등), 이용실적 관리 등의 타당성
개방성	건물 내부 접근 용이, 외부와 네트워킹 원활
밀집도	중소·벤처기업 밀집, 중소·벤처기업 지원 인프라 연계

□ 평가기준

구분		평가요소
서면평가 (1차 평가)	활용성	연간 활용계획의 적절성
	사후관리	사후 관리 및 이용실적 관리의 타당성
		장비 유지보수 및 인력배치의 적절성
현장평가 (2차 평가)	개방성	화상 회의실 구축 예정 입지 및 교통 접근성
		화상 회의실 개방 여부
	밀집도	중소벤처기업 등 밀집 여부 및 입주기업 여부
		전력공급 및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서면평가) 화상회의실 구축·운영계획서 내용에 대해 서류평가를 실시하며, 권역별 선정규모와 관계없이 서류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탈락(부적격) 처리

* (현장평가) 화상회의실 구축 시설에 대한 현장 평가 실시

※ 평가 항목의 구성 및 점수 배점은 운영기관별로 내부 기준에 따라 구성

참고 3 확장형 평가기준

□ 추진원칙

구분	내용
구축계획	화상회의실 구축방향의 적절성 및 추진 일정의 타당성
대응자금	정부지원금 대비 대응자금 비율(사업수행 의지 및 책임성 확보)
활용성	서면평가 : 연간 활용계획의 적절성 현장평가 : 지역 거점기능 수행 정도
사후관리	사후관리 계획(화상회의실 장비 관리 등), 이용실적 관리 등의 타당성
개방성	건물 내부 접근 용이, 외부와 네트워킹 원활
밀집도	중소·벤처기업 밀집, 중소·벤처기업 지원 인프라 연계

□ 평가기준

구분		평가요소	배점
서면평가 (1차 평가)	구축계획	화상회의실 구축 예정 조감도, 평면도, 공간구성도의 적합성	30
		화상회의실 필수 구성요소(장비, 흡음벽 등) 산출금액의 적절성	
	대응자금	정부지원금 대비 대응자금 비율	20
	활용성	연간 활용계획의 적절성	30
	사후관리	사후 관리 및 이용실적 관리의 타당성	20
		장비 유지보수 및 인력배치의 적절성	
소 계			100
현장평가 (2차 평가)	개방성	화상 회의실 구축 예정 입지 및 교통 접근성	30
		화상 회의실 개방 여부	
	활용성	지역 거점기능 수행 정도	40
	밀집도	중소벤처기업 등 밀집 여부 및 입주기업 여부	30
		전력공급 및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소 계			100

* (서면평가) 화상회의실 구축·운영계획서 내용에 대해 서류(필요시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선정규모와 관계없이 서류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탈락(부적격) 처리

* (현장평가) 화상회의실 구축 시설에 대한 현장 평가 실시

참고 4

일반형 · 확장형 장비 표준세트(안)

- **(표준수립)** 화상회의 장비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여러 브랜드 中 기존 설비와 연동(범용성), 설치 및 관리 효율성, 가격 대비 우수성 등을 검토하여 **장비 표준 리스트 구축**

- 리스트 내 회의장 구성에 필요한 필수요소(카메라&스피커폰, 오디오 장비 등)를 **카테고리화**하고 **지원금액별 표준세트 마련**

< 화상회의 장비 및 솔루션 카테고리 분류(안) >

영상부	제어부	음성부	기타
• 카메라 • 디스플레이 • 빔프로젝터	• 회의용 PC • 스위처/분배기 • 확장형 허브	• 스피커폰 • 회의실용 마이크 • 에코캔슬러	• 전자칠판 • 화상회의 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

- **(필수구성)** 카메라, 스피커폰, 디스플레이, 회의용 PC 등

필수구성(안)		기능	비고
영상부	카메라	화상회의 참석자 영상 촬영	※ 화상회의실 규모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구성품을 결정
	디스플레이	화상회의 참석자 영상 출력	
	거치대	디스플레이 이동형 스텐드	
	빔프로젝터	화상회의 참석자 영상 출력	
제어부	회의용 PC	화상회의 영상 및 솔루션 제어	
	스위처	영상 출력지원 기기를 연결해 하나의 모니터에 출력	
	분배기	화상회의 영상을 2개 이상 디스플레이에 동시 전송	
	카메라 제어기기	참석자 선택 촬영 제어기기	
음성부	확장형 허브	영상 및 음성기기 확장을 위한 허브 기기	
	스피커폰	마이크 및 스피커 내장 음성장비	
	마이크	음성 사운드 입력	
	에코캔슬러	음 단절, 에코 현상 방지	
기타	화상회의 솔루션	화상회의 지원 솔루션 (국산소프트웨어만 지원)	
	흡음벽 및 전자칠판 中 택1 (옵션)	흡음벽 : 하울링 방지 흡음벽 전자칠판 : 회의자료, 작성, 메모 등을 지원하는 입·출력 장비 * 흡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일반형은 모니터 2대 중 1대를 전자칠판으로 대체 가능	

- **(기본방침)** 국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조건